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003 증권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양일남, 최영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박필서, 송성현, 전영준
피고 : 한화증권 주식회사

2. 총원의 범위

피고가 2008. 4. 25. 발행한 주계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을 매입하여 만기에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피고가 2008. 4. 25. 발행한 주계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이 만기에 122%의 상환조건을 충족시킬 것이 예상되자, 피고와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는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만기일 장 마감 전 10분간의 동시호가시간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를 대량 매도하여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하여 투자자들(총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및 위 은행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179조에 의하여 총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승록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법원사무관 최동원

* 전화 : 02-2192-1222, 팩스 : 02-2648-2892